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희용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054 발의연월일: 2024. 11. 29.

발 의 자:정희용・김소희・김성원

김형동 • 박덕흠 • 김예지

백종헌 · 서천호 · 정점식

권영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있는데,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출퇴근 시간대의 복잡한 도로 등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등 봉사활동을 통하여 교통안전에 기여하고 있음.

그러나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복장 및 장비 또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에 어 려움을 겪고 있음.

본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원활한 운영과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나 구체적인 논의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.

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에 사업비뿐만 아니라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공과금 또는 인건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할

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5조의3제3항).

법률 제 호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의3제3항 중 "사업"을 "사업 및 운영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의3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의3(모범운전자에 대한 지	제5조의3(모범운전자에 대한 지
원 등) ① · ② (생 략)	원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	③
위에서 제5조의2에 따라 설립	
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<u>사업</u> 에	사업 및 <u>운</u>
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	<u>영</u>
다.	